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1 선고 2023가합5224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 문

원 고 A중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형욱, 정명운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6,91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은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은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F는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G은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8.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H은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피고 I는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3.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피고 J은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 피고 P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카. 피고 L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3.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타. 피고 M는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파. 피고 N은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2023.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하. 피고 O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8.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거. 피고 P는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파 중 조선 시대 개성부 장단군을 지역적 기반으로 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종원이며, 특히 피고 B, C, D은 2017. 3. 25.부터 2022. 5. 29.까지 원고의

집행부 임원으로서 각 회장, 부회장, 총무였던 사람들이다.

나. 경기 고양군 R 임야 12,000㎡, S 전 2,360㎡, T 전 2,400㎡, U 전 1,746㎡ 등 현재의 고양시 일산서구 V동에 소재한 각 토지(이하 'V동 토지')에 관하여 1970. 10. 16. W, X, Y 명의로 197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1년경 위 W, X와 Y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84707호), 1991. 12. 17.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V동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후 V동 토지를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토지와 건물 등 종중재산을 구입하였고, 특히 2004. 6. 11. Z으로부터 파주시 AA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4. 7. 1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AB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피고 B는 2020. 2. 13. 그 보상금으로 책정된 1,983,060,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들은 과거 자신들 또는 자신의 가족들이 출연하여 V동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합당한 처우나 보상 내지 분배를 요구하여왔는데, 피고 B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임원 회의나 총회의 결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던 위 수용 보상금 중 446,913,220원을 반환하지 않는 한편, 나머지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순번	수령인	관계	출연자	출연 금액(원)	지급 금액(원)	지급일 (2022년)	비고
1	피고 B			미상			전 회장
2	피고 C	본인	C	5,000	41,000,000	7/25	전 부회장
3	피고 D	조카 동생	AC AD	20,000 3,000	163,000,000 24,000,000	7/25	전 총무
4	피고 E	자	AE	10,000	81,000,000	7/25	
5	피고 F	자	AF	3,000	24,000,000	7/25	
6	피고 G	손자	AG	5,000	41,000,000	7/25	
7	피고 H	자	AH	10,000	81,000,000	7/25	
8	피고 I	자	AI	10,000	81,000,000	7/25	
9	피고 J	손자	AJ (X)	10,000	81,000,000	8/1	
10	피고 P	본인	P	5,000	41,000,000	8/1	
11	피고 L	자	AK	5,000	41,000,000	8/1	
12	피고 M	자	AL	10,000	81,000,000	8/1	
13	피고 N	본인 동생	N AM	15,000	123,000,000	8/2	
14	피고 O	자	AN	5,000	41,000,000	8/8	
15	피고 P	자	AO	5,000	41,000,000	8/11	
16	AP	본인	AP	2,000	16,000,000	7/25	반환으로 소취하
17	AQ	자	AR	5,000			미지급

사. 원고 종종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의) 본회는 아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제6조(총회) 총회는 전국 회원 20명 이상으로 성립하고 재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이사회) 이사회는 임원회와 이사로서 성립하되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부서 담당이사로 구성하되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치 아니한 임원은 서면 의결권을 회장 앞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이사회회의 소집) 회장은 본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임원회의 종류와 소집) 임원회의는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하고, 정기 임원회의는 4개월에 1회 임시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규약의 개정과 예산의 심의결정,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사안을 의결한다.

제13조(이사회회의 권한) 이사회회의는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회무의 중요 안건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4조(임원회의 권한)

1. 임원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회의 결의사항을 실천하며 회무 전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총회에 제안할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15조(기구) 본회에 아래의 기구를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이사: 9인(중손 당연직 이사 포함)
5. 고문: 약간인

제16조(부서) 본회에 총무, 재무(자산관리), 전예, 육영(장학), 청년, 부녀 등 사업부를 두고 담당이사가 각부의 부장이 된다.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원고가 V동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들 또는 그 가족이 금원을 출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V동 토지는 피고들의 가족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피고들 또는 그 가족의 출연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종중재산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또한 V동 토지를 처분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1998년 초대 이사회 등에서 이미 각 출연에 상당한 금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사실 및 위 각 거시 증거에 갑 제10 내지 14,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14호증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재산으로 그 보상금은 원고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총회나 그 위임에 의한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이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열린 2004. 6. 18.자 원고의 이사회(임원회) 회의에는 X, AS, W, 피고 B, E, F, P 등 당시 원고의 임원 7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위 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경과를 보고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피고 B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다만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하여 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고 이를 명의신탁 받은 피고 B의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원고가 보전하여 주는 등 종중재산으로 관리되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별도의 명의신탁 사례금까지 지급하였다.

다. V동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자인 Y, X, W 중 매수대금 출연과 관계된 사람은 X뿐이었고(X의 부 AJ이 10,000원을 출연하였다), W는 당시 종손으로서 원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V동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이를 종중재산으로 관리하였다.

라. V동 토지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소지한 매도증서에 의하면 그 매수대금은 785,400원으로 피고들 측이 출연한 금원의 총액인 128,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피고들 측이나 다른 종원들의 출연금만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또한 피고들 측의 출연금 외에 V동 토지 마련의 계기가 된 AT 조성사업을 수행한 건설회사가 전달한 '위자금'이 매수대금 재원에 보태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V동 토지를 취득한 1970년대에는 사실상 종중의 활동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는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 외에도 당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들은 을 제4호증(초대 이사회 의결서 등)에 근거하여 1998년 정기총회의 위임에 의한 이사회 회의에서 V동 토지의 출연금에 대한 분배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결서에는 V동 토지의 '구입자금 출자분 분배요청' 사건에 대해 '원칙적 분배 결의(총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분배 방안이나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 다만 일부 피고들을 포함한 종원들의 V동 토지 대금 출연과 관련한 분배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종중 내에 '예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분배 방안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이사회 결의 외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 방안을 수용하여 결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사.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도 각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들이 분배 결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을 제13호증(결의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분배 방안 없이 예우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분배에 찬성하였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급받은 주문 기재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더하여 각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법정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석, 판사 류승우, 판사 이균철